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23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김현정 · 김문수 · 박지원
김남근 · 박 정 · 박홍배
이강일 · 차지호 · 박정현
남인순 · 장종태 · 이재관
민형배 · 민병덕 · 복기왕
양부남 · 박홍근 · 이순신
의원(1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법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됨.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신고는 신고주체가 공직자등인 경우로서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이행으로서의 신고와 신고주체가

‘누구든지’인 경우의 신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의 신고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부를 통해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었던 송부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한 바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규범력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송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등으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신설).
-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 신고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에 대한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 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한 공직자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 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한 공직자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첩받은”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첩하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2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조제7항”을 “제7조제8항”으로 한다.

제23조제7항 중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를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 ⑥ (생략) <u><신설></u>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한 공직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8항----- ----- ----- ----- -----.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⑥ (생략) <u><신설></u>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한 공직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u>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u>이첩받은</u>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u>이첩하고</u>,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u>한 후</u>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u>이첩</u> 또는 <u>송부하고</u>,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제8항----- ----- ----- ----- -----.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 ----- ----- ----- ----- ----- -----<u>이첩</u> 또는 <u>송부받은</u>----- ----- -----. ② ----- ----- ----- ----- ----- ----- -----<u>이첩</u> 또는 <u>송부하고</u>-----
---	--

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2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⑥ 제4항 또는 제5항-----

-----.

⑥ (생 략)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⑥ (생 략)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제7항-----

-----.

제18조(비밀누설 금지) -----

-----제7조제8
항-----
-----.

1.·2.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과태료 부과에 필
요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u><신 설></u>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	--